

## 韓國貿易 政策의 新保護 貿易主義에 對한 對處方案一考

朴 東 烈

經 營 學 科

(1985. 4. 30 접수)

### 〈要 約〉

70년대초부터 본격화한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며 각종 비관세장벽을 동원하여 낙후된 산업을 보호하고 개도국 특히 신흥공업국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보호무역과 그 양상과 깊이가 다르다. 이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지대한 장애요인인바, 획기적인 무역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은 선·후진국간의 비교우위변화와 선·중진국간의 산업구조의 유사성 내지 구조적 경직성, 그리고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신보호무역의 실패를 보면 비관세장벽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GATT의 예외조항 남용, MFA의 타부문적용 확대, GSP수혜품 축소 및 잔존수입제한 조치의 철폐거부 등이다.

이때문에 영향받는 한국무역의 충격은 무역의 축소균형과 무역수지악화, 품목규제에 의한 관련산업투자 위축 및 고용기회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처방안은 보다 긴 안목에서 수출의 지역별 집중과 품목별 집중현상을 개선하고 실적위주의 지원정책을 배제함과 아울러 출혈수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 A Study on the Korean Trade Strategy Coping with Neo-Trade Protectionism

Park, Dong-Rhyul

Dept. of Mgt.

(Received April 30, 1985)

### 〈Abstract〉

Developed countries adopted Neo-Trade Protectionism in the 70's and have since strengthened and renewed the policy in various aspects. Accordingl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suffered from the additional burden of trade-strategy.

In this thesis, I, first of all, survey the background and theory of Neo-Trade Protectionism. Second, I state the most controversial aspects of Neo-Trade Protectionism item by item NTB, the abuse of the Escape Clause of GATT, and the expansion tendency of MFA to the other areas. Third, I discuss the influences of the economy of Korea.

Finally, I study the ways for Korea to cope with this critical situation and conclude that the counterplans can be found in the improvement of regional and item concentrations and the restraints of the profit-down export strategy and the dumping export.

## I. 序 論

2차대전 이후 GATT와 IMF라는 두가지 체제하에서 1960년대까지 자유무역주의를 기조로 하여 그 성장상을 이룩한 세계경제는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독트린에 의한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2차대에 걸친 오일쇼크에 의해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심화되면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에따라 국제무역환경 또한 크게 악화되었다.

70년대 이후의 세계무역환경의 특징으로서 첫째 GATT의 최혜국대우, 호혜주의 및 무차별관세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세계무역질서가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GATT규정의 예외조항인 제 24조를 탈탈하기 시작하였고<sup>(1)</sup> 둘째, 70년대에 들어와 종전의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통화질서가 불안정하게 되었고<sup>(2)</sup> 셋째, 선진국중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과 개도국중에서 7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여준 소위 NIC.의 출현<sup>(3)</sup>에 의해서 60년대까지의 선진국간 수평적분업 및 선·개도국간의 수직적 분업질서 형성이 와해되면서 선진국간 혹은 선·개도국간 무역구조상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자국의 사양화된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주요수입규제수단으로서의 종래의 관세장벽이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도입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와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방식 즉 신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처음에는 농산품과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최근에는 서비스산업 및 기술집약적 상품에 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20여년에 걸쳐서 자연자원의 부존이 빈약하고 자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외형적으로는 중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이는 가공무역형 경제구조의 형성과정에서 달성된 것인바, 이 가공무역형 경제구조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며 취약한 것이 그 특징이다. 대외의존도<sup>(4)</sup>가 70%이상인 한국경제가 7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화되는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와 산업기술의 타국이전을 기피하는 기술국가주의, 자연자원의 국제분업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자원빈국주의 및 중진국규제론 등이 만연해가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어떻게 값싼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고 이를 보다 진보된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그간에 경제성장과정에서 국민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누적되어온 외채를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본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어떻게 대처하며 또한 국제무역에서 잠재적인 경쟁대상인 후진개도국의 추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수출진장을 꾀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당면 급선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날로 강화되고있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신보호무역주의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를 논하였다.

## II. 新保護貿易主義의 背景과 理論

新保護貿易主義가 강화되는 그 배경에는 비교우위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유사성, 구조적 경직성,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등 세가지 측면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신보호무역의 배경은 세계경제 성장에 따라 비교우위가 변동하여 국제경쟁력의 구조변화가 발생한 데에 있다.<sup>(5)</sup>

(1) 김진형, 국제경제학, pp.303.

(2) 이장호, 외환관리론, pp31~35. pp.90~p.97.

(3) 조동성, 경영정책과 장기전략계획, p. 297. NIC,는 New Industrial Countries(신용공업국가)의 약자.

(4) (수출입액)÷GNP×100. 이때 수출액은 C.I.F 기준 수입액은 F.O.B기준.

(5) 김태희, "신보호주의의 배경과 최근동향", 수출입은행 조사월보, 1983.9. 서석배, "신보호주의와 중진공업국의 역할", 한국경제학회 제13차 학술 및 정책세미나, 1984.6..

60년대 초까지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이 절대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상당부분의 비교우위가 서구 및 일본으로 이전되었으며 다시 신흥공업국으로 이전되어왔다. 60년대에는 섬유, 고무제품 등 단순 노동집약적 제품들이, 70년대에 와서는 철강, 선박, 전자제품 등 자본집약적이면서도 숙련노동집약적인 제품들이 최근에는 자동차, 기계류 등 자본과 기술이 동시적으로 집약되는 제품으로 확대되는 등, 이전의 범위와 속도가 가일층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이 상대적으로 정체됨에 따라 국제경기를 주도한 선도부문의 출현이 지연되고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까지 산업구조는 극히 경쟁적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와같은 비교우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제적분업이 체제를 잡지 못한 현상태에서 선진공업국간의 수평적 분업질서는 와해되고 선·후진국간의 수직적 분업질서마저 동요되어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계는 ① 산업구조의 발전과정이 현대기술체제와 무역의 유용성으로 보아 일정한 한계에 달한 선진국 그룹과, ② 그중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예외적인 일본과, ③ 70년대를 전후하여 급속히 산업구조의 발전과정을 추후하기 시작한 중진국 「그룹」간에 치열한 무역전쟁이 일고 있다.

둘째, 구조적 경직성에 보호무역의 배경이 깔려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은 각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초래한다. 즉 비효율적인 산업부문은 축소되고, 거기서 남는 생산요소를 비교우위 있는 타부문에 이전해야 한다. 일본 및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수출충대를 수반한 국제비교우위의 변화는 선진국의 필연적 산업구조개편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선진국 경제구조는 그 자체가 경직성을 갖고 있는 데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비판세장벽에 의한 선진국 상호간의 무역마찰은 물론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강화라는 결과에 도달한다. 이는 선진국 자체내에 구조조정능력을 감소시킨 여러가지 변화가 일기 때문이다.<sup>(6)</sup> 즉 경제외적 요인에 의하여 생산요소의 부문간 이동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사양산업들은 대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며 이들 산업은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어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완강하므로 보호무역은 강화되게 된다. 임금구조의 경직성도 산업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데 임금상승률은 생산성에 비례하여야 하나 노조의 압력 및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생산성과 무관하게 상승하며, 이는 산업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성장산업으로의 노동이전을 지연시키고 낙후된 산업에서 상대적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바,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의 구조조정능력은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성장둔화로 더욱 감소되고 있다. 성장둔화나 경기침체는 수입경쟁부문간 조정비용을 가중시키고 또한 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확대시킨다. 경제성장이 부진할 경우 성장산업부문의 확대가능성이 미약하여 낙후된 산업으로부터 지원을 흡수할 능력이 감소하고 수입억제와 낙후된 산업의 보호는 그 산업의 능률을 더욱 저하시켜 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다. 선진국은 정치·경제·사회적 이유로 조정의 비용을 수입억제를 통하여 타국에 이전하고 있다.

셋째,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위 2가지 배경이 직접적 원인인데 비하여 간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관리통화제도는 국내균형 우선의 제도이므로 국제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국은 1944년 7월 브레튼 우즈협정을 보게되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탄생시킨 가운데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환시세의 안정화로 세계무역의 신장에 크게 기여한 반면 국제유동성문제와 국제수지 조정의 경직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축통화인 미국달러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던 50년대에는 IMF 체제는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외군사비 및 차관공여의 증대,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에 따른 자본수지저차, 미국기업의 해외경쟁력 저하등으로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일로에 있었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되자 IMF 체제의 모순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71년 8월 닉슨행정부가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하자 명목상의 금환본위제도 폐지되어 변동환율제를 각국이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요인은 관율변동의 작용을 통하여 국제수지 불균형을 극소화시켜 국제통화질서의 동요에 따른 국제인플레이션이 국내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

(6) 김세원,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신흥공업국의 대응", 무역, 1979.7

험이나 국내의 고용감소를 방지하고자하는 대내적인 안정정책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환율제도의 이행은 빈번한 환율변동으로 국제거래의 채산기준의 불명확성과 외환리스크의 발생등으로 무역면에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안정적인 무역발전에 위협이 되고있다. 또한 환율의 변동은 구매력의 변동을 초래하여 수출입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원리인데 환율변동의 기복이 너무 심하여 실물 경제에 전도되지 못하고 있다. 즉 환율변동과 수출입간에 커다란 타임래그가 발생하며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같은 배경을 갖는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의 보호무역, 사양산업의 보호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억제개도국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등으로 특징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하여는 장을 바꾸어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신보호무역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세계경제에서 자유무역의 기간보다 보호무역의 기간이 더 지배적이었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1870년대, 양차대전 이후 및 1960년대) 국제적인 불경기(1876~1890, 1929~1939,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전쟁 기간 등으로 보호주의가 일반적인 추세였고 자유무역 환경은 1820년~1870년에 걸친 50여년과 2차대전후의 약 20년에 불과하였다. 고전적 보호무역주의는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sup>(7)</sup>에 근거가 있는바, 리스트에 의하면, 자유무역이론은 국가간에 경제성장 단계가 상이한 점을 간과했으며, 자유무역이론이 범 국가적 공화국을 가정함으로써 개인간의 경제활동과 국가간의 경제활동을 동일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으며 따라서 후진국에서는 유치산업을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일부분적인 보호효과를 설명하는데 지나치 않으며 오늘날의 선진국 사양 산업보호를 설명하지 못한다.

후진국의 보호무역을 옹호하려는 또 하나의 이론으로는 제 3세계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재개발원인을 규명하려는데서 종속이론이 최근 대두하고 있다.<sup>(8)</sup> 이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가 서로 자유무역을 한다면 자본이동에 의하여 이윤율이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는 후진국의 노동인여 가치가 선진국으로 이전하여 후진국은 계속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오늘날 신흥공업국의 수출주도형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보호추세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신보호무역주의의 근거는 국내균형(완전고용과 성장) 및 국제균형(무역수지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선진국의 근시안적 경제정책에 있다고 본다. 보호무역은 낙후된 산업에서의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국제수지 균형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 점에 근거를 둔 보호무역은 실업을 해외로 수출하고 근린국평화정책(近隣窮乏化政策)으로 전향하며 경제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과 고용확대에는 한계점이 있고 보호무역의 정당한 근거로 성립할 수 없다.<sup>(9)</sup> 국제수지개선에 는 오히려 환율정책이, 국내균형을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 등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은 이러한 정책수단의 실패에서 연유되기도 한다. 국제간의 비교우위의 변화에 따른 낙후된 실업의 출현은 국내적으로 그 충격효과가 크며 상당기간 동안 불균형이 존속하고 균형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자유무역에 대한 간섭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의 필요성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부단히 일어나며 그 원인이 해외에서 온 것인지 기술적 실업 구조적 경직성 등의 국내적 요인에서 온 것인지 불분명하며 산업조정의 필요성이 국내에서 연유된 부분이 더 많을때 자유무역에 대한 간섭은 경제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경제적 근거외에도 보호무역주의에는 미경제적 근거가 있는 바, 그 하나는 국방상의 이유로서 국방과 같은 공공재는 시장경제원리에 일임하면 과소투자가 되며 이의 적정수준은 국민전체의 정치적 안보적 결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가치산업 혹은 전략산업에 대한 보호로서 잠재성장산업의 기술프론티어를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 가치기준에 의해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업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경제이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기준을 근거로 하며 미래가 불투명

(7) 김신형, 전제서, p282~286.

(8) 아이안 렉스브로우 지음, 박종수역, 「종속이론이란 무엇인가?」, 청아출판사, 1984.

(9) 엄영석,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자유주의 경제에 관한 강연 및 세미나 발표 요지 외대경제경영연구소, 1984. 6.

할 때 국민경제 전체의 장기적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데 통폐이다.

Ⅲ. 新保護貿易主義의 現況

1. 非關稅障壁의 強化

GATT는 발족 당시부터 원칙적으로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조치를 부정하였으나, GATT 규정 자체에 예외규정들이 많아서 실시면에서 비관세장벽을 구체적으로 완화하였다. 그후에 추진국의 경제건설과 무역보호를 위한 UNCTAD 역시 비관세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어느정도 유형을 만들어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GATT와 UNCTAD의 비관세장벽의 유형은 <표 1>과 <표 2>에 나타나 있다. 이 유형들은 네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표 1> GATT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유형

규 제 형 태	유 형
1. 정부관여 (Govtrnmen Participation in trade and Restriction)	1. 정부원조(Government Aids) 2. 국영무역(State Trading) 3.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 4. 정부독점 및 제한적 관행(Government monopoly and Restructive practices)
2. 관세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Customs and Administrative Entry procedures)	1. 상계관세(Counterveiling Duties) 2.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3. 관세분류(Customs Classification) 4. 관세평가(Valuation) 5. 영사수속 및 서류(Consular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6. 견본규정(Samples Regulation) 7. 관세 환급(Repayment of duties) 8. 관세수속(Customs formalities) 9. 자의적 관세품목 분류
3. 표준규정 (Standards)	1. 공업표준 (Industrial Standards) 2. 보건 및 안전기준(Health and Safety Standards) 3. 제품구성에 관한 기준(제량표준, 제약기준, 함량규정, Others Standards Concerning Products) 4. 상품 및 용기에 관한 규정(Requirement concerning marking labell) 5. 가공규정(Requirements concerning process) 6.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Requirements concerning of c/o) 7. 포장에 관한 규정(Requirements concerning packing)
4. 수입과 수출에 관한 특별제한 (Specific limitation)	1.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2. 수입금지(Embargoes) 3. 수입허가제(Import permission system) 4. 외환관리제도(Exchange control) 5. 쌍무협정에 의한 차별규제(Discrimination resulting from bilateral agreement) 6. 구입처의 차별규제(Discriminatory sourcing) 7. 수출규제(Export restraints)

규 제 형 태	유 형
	8. 국내가격통제조치(Measures to regulate domestic prices) 9. 관세 할당(Tariff Quotas)
5. 가격 메카니즘에 의한 통제	1. 사전수입담보(Prior import deposits) 2. 부가세, 항만세, 통계세(Surcharge, port taxes, statistical tax) 3. 차별적 내국소비세, 정부운영보험료율(Discriminatory film taxes Use taxes, Goven't controlled insurance rates) 4. 선별적 신용제한(Discriminatory credit restriction) 5. 가변과징금(Variable levies) 6.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s) 7.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6. 기타규제	1. 영사수수료, 인지세 2. 광고, 선전, 운송, 상영시간규제 3. 함량규제 4. 제한적 영업판행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비관세장벽의 실태, 1979.

〈표 2〉 UNCTAD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유형

Type I

Group A

분 류 기 호	내 용
I A 1	수입쿼타(Import Quota): Global Quota
I A 2	수입쿼타(Import Quota): Quota (Selective, bilateral)
I A 3	쌍무수입허가제도: 임의적, 제한적(Dicretionary Restrictive)
I A 4	수입허가제도: 자동적
I A 5	수출자율규제: 쌍무적, 다자간
I A 6	수입금지: 수입정지
I A 7	수입금지: 원산지별
I A 8	국영무역
I A 9	공공기관의 국산품 우선구매
I A 10	국산화비율에 관한 규정
I A 11	수출제한

Group B(가격효과에 의한 제한)

I B 1	가변과징금, 수입부가세 (Basic price, 관세 할당)
I B 2	수입예치금제도
I B 3	덤핑방지세, 상계관세
I B 4	금융대출제한
I B 5	수입경쟁산업에의 조세감면
I B 6	수입경쟁산업에의 보조금(직, 간접)
I B 7	국내충당금

Type II  
Group A

분 류 기 호	내 용
II A 1	통신수단에 의한 광고활동 제한
II A 2	수량적 마케팅 제한

Group B

II B 1	포장 및 상표규정
II B 2	보건 및 위생규정, 품질표준
II B 3	안전 및 공업표준
II B 4	국경세조정
II B 5	물품세, 간접세
II B 6	통관절차 및 관행
II B 7	관세평가절차 및 관행
II B 8	관세분류절차 및 관행

Type III

III 1	정부독점(제조, 판매, 배급)
III 2	개발정책(구조적, 지역적)
III 3	국제수지정책
III 4	내국세정책
III 5	사회보장정책
III 6	감가상각정책
III 7	정부에 의한 연구 개발
III 8	정부구매
III 9	도량형표준제도
III 10	역외운송비

자료 : 한국무역연구소,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1973.

첫째, 가격적 장벽으로서 이는 수입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상대국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약화키시든가, 보조금지원이 된 수입상품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그 예로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있다.

둘째, 수량적 장벽으로서 이는 수입자체를 금지하거나 수입량의 제한으로 국내산업의 기존영역을 지킬 목적으로 관세 및 쿼터제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품질적 장벽으로 이는 수입물품에 특별한 품질·안전·보건 등에 관한 규격요건 요구로 국내시장의 진입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네째, 행정적 장벽으로 이는 수입절차 및 서류를 까다롭게 하여 정상적인 수입방해를 도모하거나 수입국 측이 국내에서 수입물품이나 자본거래에 제약을 두어 수입제한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신탁호무역의 수단으로 채택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비관세장벽은 명목상으로는 무차별적인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도국에 크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비관세장벽이 개도국에 미치는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불균등한정도로 심각하며 또한 동일한 비관세장벽이라도 그것이 선진국보다 개도국, 특히 NICs의 수출관심품목에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제세시장에서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장차 가지게 될 품목에 국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체 총수입중 비관세장벽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frac{1}{6}$ 인 데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의 적용을 받는 비율은  $\frac{1}{6}$ 보다 많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비교우위의 정도가 큰 상품일수록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의 적용빈도가 크다는 것이다.<sup>(10)</sup>

세째,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의 적용 및 운영이 아주 복잡하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제한 구조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므로 그 내용이 이질적 및 복합적이다. 또한 어떤 것은 본래부터 법률로 제정된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사후의 아무런 체계적인 조정없이 여러 행정부처의 정책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유행하다 그 성질이 매우 다양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진국에는 국내산업보호목적만을 위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네째, 정보부족 및 제도의 변칙적 운영 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관련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여러가지 비관세장벽이 자국의 수출에 어떻게, 어느정도 제한적인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란 극히 곤란하다. 또한 수입국의 정책은 어느 시점에서나 아무런 통고없이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출업자에게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sup>(11)</sup>

다섯째, 대부분의 비관세무역장벽이 수출업자와 관련 유통기구에 불명확성과 유통적인 위기부담을 지워 줌으로써 그것이 비관세장벽의 제 1차적인 제한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비관세장벽은 그 완화 및 철폐를 위한 협상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는 비관세장벽의 복잡성, 불확실성, 예측불능성 및 기준의 모호성때문이며 실사 정부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양허정도를 비교하여 이를 균일화할 지조의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sup>(12)</sup>

## 2. GATT의 例外條項 남용

GATT의 기본원칙은 관세에 관하여는 결핵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수량제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폐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GATT의 전규정을 준수하는 의무와 더불어 I.M.F.의 제 8조국<sup>(13)</sup>이라는 소위 경상거래에 있어서의 한제한의 완전철폐라는 의무까지 집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완전자유화가 촉구되고 있다. 다시말해 선진국은 GATT에 가입하면서부터 원칙적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기존의 수입제한적 장벽도 철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GATT 가입의정서상 Grandfather 조항에 의거 GATT 가입이전의 국내법이 GATT 규정에 부합하지만 GATT 가입 이후에는 모든 국내법이 GATT 규정에 일치하여야 하며 다만 몇가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의 일시적 제한을 인정하는 예외적 조항은 두고있다. 선진국에 일시적 방법으로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GATT 12조의 예외조항으로서 국제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외환준비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각국시장의 교란등의 예방 또는 방지를 위해 외환준비의 합리적 증가를 취할 수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 조치도입국은 GATT와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얻어야하며는 조치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국제수지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IMF의 관정에 위임하고 있다.

둘째,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GATT 19조는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단시일 내에 증가하여 수입국내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을때 단계적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 도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협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조항을 채용하여 일방적인 제한조치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수입규제로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이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한 상품수출이 수입국내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피해<sup>(14)</sup>를 입힐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10) KOTRA. 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1981. 82. 83.

(11) 이진우, 선국제무역규범, KIEL, 1979.

(12) KIET. 보호주의의 배경과 80년대 세계무역과제, 1982.

(13) 이효구, 현대의 환론, p215. 1979.

(14) Material injury(실질적인 피해)는 전술한 Serious injury(심각한 피해) 보다 수입국측에서 볼때 그 정도가 심한 경



수 있는 규정이 GATT 6조 및 16조에 명시되어 있다.

以上の 예외조항을 상술하여 보자.

먼저 GATT 19조 Safeguard 조치에 대하여 고찰하여보면, GATT 제제는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ennedy Round (64.5~67.6)와 동경 Round(73.9~79.4)등 7차에 걸친 관세협상에 의해 무역자유화축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70년대말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의하여 선진국들이 GATT 조항에 예외적 조항을 원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여 감에 따라 GATT의 기본이념이 흔들리면서 GATT의 무기력

<표 3> GATT 관세협상 내용 요약

구분	교섭기간	명칭	참가국	양허활목수	총양허액(\$)	비율
제 1 차	1947	일반관세협상	23	45,000개	100억	—
2 차	1949	일반관세협상	32	5,000개	—	—
3 차	1950—51	일반관세협상	34	8,700개	—	—
4 차	1956	일반관세협상	22	3,000개	25억	—
5 차	1960—61	딜론라운드	23	4,000개	49억	7%
6 차	1964—67	케네디라운드	46	30,000개	400억	35%
7 차	1973—79	동경라운드	99	30,000개	1,250억	33%

주: 제 1—5차까지는 item by item 교섭방식적용 제 6—7차는 linear cut 방식적용

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들이 원용하는 GATT 조항중 제 19조인 Safeguard 조항에 대해 개도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난 75년부터 80년까지 주요 선진국들은 43건의 Safeguard 조치를 발동, 수입제한을 강화했다. 대부분이 일본과 신흥공업국들의 수출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이외에도 이 짧은기간 동안의 43건이 갖는

<표 4> Safeguard발동 요건 현황(1982년 2월말 현재)

단위: 건

	'50—54	'55—59	'60—64	'65—69	'70—74	'75—	계
미 국	4	7	3		3	8	25
서 독		1	1		1	4	5
프 랑 스			1	1			2
이 탈 리 아			1	1			2
스 페 인				2		2	4
오 스트 리 아		1	1	2			4
카 나 다		2		3	6	7	18
호 주		2	8	7	1	18	36
기 타		2	3	1	1	4	11
계	4	15	18	17	12	43	109

주: GATT 1 조에 의거해서 발동된 것으로 GATT에 통보된 것임.

심각한 의미는 지난 50년부터 80년까지 30년간 발동된 Safeguard 총수 109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라는 점이다.

safeguard란 어떤 상품의 수입증으로 국내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관세인상, 관세율쿼터제도의 도입과 징금의 부과, 수입수량쿼터의 제한, 수입허가서의 발급정지 등의 조치가 여기에 포함된다. GATT 제19조 이를 말한다.

는 사태가 긴급할 경우에 일정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Safeguard를 예외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또한 GATT 19조에 근거를 둔 Safeguard 외에 현실적으로 이에 근거하지 않는 Safeguard도 있는데 이는 ① 2국간협정에 규정된 Safeguard와 ② 다국간협정에 규정된 Safeguard(예, MFA)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Safeguard는 분명히 GATT 정신에 위배된 것이지만 GATT 19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차별원칙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의 발동요건이 애매하고 그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규약에 위배되는 Safeguard를 자행해 왔다.

GATT 19조와 관련된 Safeguard 발동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발동요건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Safeguard를 발동시키고저하는 수입국과 수출국간에는 견해차이가 클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수입국측의 일방적인 발동을 초래한다는 점, ② 발동기간과 연장 그리고 규제형태와 한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발동국의 임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③ 위법적 발동조치를 철회토록 권고하거나 구속할 권한을 갖는 감시기구가 존재하는 않는 점, ④이에 따라 Saguard 발동을 무차별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는데 수출적인 개도국의 입장에서 이에 대항하는 조치나 보상의 체계적 요구는 대개 무시된다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 GATT 제 6조 및 제 16조를 통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적용 확대에 관하여 알아보자.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가 팽배해가고 있는 가운데 선진각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는 가장 인기 있는 보호조치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것 같다. 최근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의 외국 수입품에 대한덤핑 제소는 가히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덤핑제소는 주물거리가 될 만큼 흔치 않은 이슈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양상이 바뀌어 81년에 22건이 이루어졌고 82년에는 무려 106건으로 대폭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덤핑제소가 남발될 조짐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제품중 주요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품치고 덤핑제소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실정이다. 더우기 경쟁상태에 있는 선진국산업의 사양화된 분야에서의 덤핑 제소위험은 더욱 크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우리 업체가, 덤핑제소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부당하게 당해단 왔으나 우리가 선진국의 반 덤핑관세부과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제소 초기에 봉쇄할 수 있음은 물론 사전 예방 조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 최근 몇몇 사례를 통하여 드러났다. 또한 덤핑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덤핑마진을 극소화시킴으로써 시장의 상실 없이 가격경쟁력을 계속 유지하여 다른 경쟁국에게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다.

GATT 6조의 내용을 풀이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지급받은 보조금의 규모와 동질 혹은 그 이하에 상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덤핑된 상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이 수입국내에 수입되어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면 덤핑된 상품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ATT는 16조에서 다시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지급을 중단하고, 일차상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정요건하에서 행하도록 못박고있다.

또한 GATT 6조는 보조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16조와 비슷하지만 규범적 성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6조는 자유경쟁원칙을 옹호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조항을 갖고 있지만 6조는 수입국입장에서 덤핑 혹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자국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AGTT의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Escape Clause)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6조의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도 GATT 제 1조와 모순관계에 있다. 즉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는 특정각국의 특정상품에 대해서, 다른 체약국에게는 부가하지 않는 추가관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AGTT 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2조의 양허수준 준수주의무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GATT 6조의 특징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국의 권리를 강조하지 않고 부과하기에 앞선 여러가지의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6조는 덤핑과 보조금지급이라는 두가지의 불공정

행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성조항(Hybrid Clause)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나 6조를 다른 GATT의 역사를 보면 이 두가지 분야가 완전히 분리되어 취급되어 왔다. 덤핑문제는 GATT 초창기부터 체약국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Kennedy Round에서 반덤핑코오드가 제정되어 1969년부터 발효되었고 다시 1979년의 동경 Round에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반면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약은 그보다 12년 늦은 1979년 동경 Round의 소산으로 생겨났다.<sup>(15)</sup>

GATT 16조는 보조금 분야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GATT의 핵심조항인데, 16조가 부과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보조금의 GATT에 대한 통보의무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시에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전 체약국에 적용된다.

둘째, 일차산품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국가의 일차산품 수출량이 지난 대표기간중 세계수출시장에서 차지해온 수준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이다. 이 의무도 전 체약국에 적용된다.

셋째,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 의무는 “제 16조 4항의 효력발생에 관한 선언”에 서명한 17개국에만 적용된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반덤핑관세 관련 국내법은 GATT의 전 반덤핑코오드의 국내철차로서 기본적으로 신코드와 동일하다. 이와같은 반덤핑관세 부과절차가 다른 GATT의 예외조항을 제치고 인기있는 수입규제 수단으로 등장한 이유는 ① 선별적인 원용이 용이하다는 것과 ② 수출국에 책임을 진가할 수 있다는 것과 ③ 수입국정부의 협상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④ 수입제한효과가 크다는 것에 있다.

### 3. MFA의 타부문 적용확대경향

MFA<sup>(16)</sup>는 선진국의 대개도국 섬유류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규약으로 73년 12월말로 종료된 LTA<sup>(17)</sup>를 대체하고 국제섬유교역질서를 확립키 위해 GATT 체제내에서 섬유류 수출입국간에 협정을 맺었다. 유효기간은 4년으로 78년 1월로 1차 연장되었고 82년 1월 4년 7개월간 연장되었다.<sup>(18)</sup>

MFA의 골격은 수입국측 입장에서 볼때에 국제교역상 가장 민감비한 섬유류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선별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시장교란을 야기시키는 수출국들의 관련상품만 선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고 수출국측 입장에서는 수입규제의 기준을 설정하고 감시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수입규제의 남용방지와 일정수준의 수출물량증대를 보장받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로 전환된 섬유류시장에서는 섬유수입국인 선진국의 입김이 보다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섬유류에 관한 예외적인 선별적용 원칙에 타부문에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표 5>를 참조하여 MFA의 경과과정을 살펴보자.

① STA(Short-term Arrangement on Cotton Textiles: 단기면직물협정) 61년 10월부터 62년 9월 까지 실시된 면직물에 관한 국제규범이다. GATT 체제내에서 다자간 시장교란이라는 용어가 토의되고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이다.

② LTA (1962. 10~1973. 11.) 3차에 걸쳐 연장실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면직물수입규제량의 한도 수입국측의 Safeguard 규정 및 수출자율 규제에 인정 등으로 MFA의 골격과 유사하다.

③ MFA I (1974. 1~1977. 12) 규제대상으로서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며 MFAI에서는 협상 2개월전과 과거 12개월의 실적기준에 따라 연 6%이상의 Quota 증가율을 인정하며 품목별 융통성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수입국의 시장교란시에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④ MFA II(1978. 1~1981. 12) 여기에서는 MFAI를 대원칙으로 하여 수입국측과 어떤 사정이 생기면 이

(15) 보조금협약으로 이것은 GATT의 보조금 관련조항인 6조와 16조 그리고 분쟁해결 절차인 23조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다.

(16) Multi-Fiber Arrangement의 약자로서 다자간 섬유협정을 지칭.

(17) Long-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l Trade in Cotton Textiles의 약자로 국제장기면직물협정을 지칭. 이에 관한 상술은 김종훈, 한국의 국제수지의 환론 p249~254, 법률사 1977.

(18) K.T.A. 미국의 상계 및 반덤핑관세 현황과 대응방안, 1982.

〈표 5〉 MFA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MFA I	MFA II	MFA III	(MFA <sup>비</sup> <sup>고</sup> 관련 적용문제점)
협정체결일 (기간) 쿼터 연중가율	1973. 12(4년) • 6% 이상	1977. 12(4년) • 합리적인이탈 (reasonable departure) 조항의 삽입으로 6%이하 적용가능 조건: 시장착란 발생시	1981. 12(4년 7개월) • 상무협정에 의해 상호합의하에 하향조정 가능 조건: 기존의 시장교란개념 이외에 국내소비 둔화시 및 시장점유율이 큰 국가에 대한 쿼터 축소가능	• 국내 소비둔화와 연중가율 축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무협정시 분쟁의 소지가 큼 -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FA II 기간중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6% 이하의 연중가율적용, 이번 MFA III에 의한 상무협정시에는 연중가율 하향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융통성	• 조상+이월=10% • 전승은 7%이상	• 좌동 • 그러나 합리적 이탈 조항의 적용으로 하향조정가능	• 좌동 • 상호협정의에 의해 하향조정 가능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점유율이 큰 국가에 대한 융통성 제한 압력가중 전망이 경우 이외 보상요구가 가능
기준 쿼터량 삭제	• 규정 없음	• 좌동	• 쿼터 연중가율 규정을 함께 적용, 특정 상품에대한 낮은 연중가율 적용가능	• 다 쿼터 품목의 쿼터 감축, 연중가율 하향조정, 미소진 쿼터 품목의 쿼터 감축 시도예상
수입급증방지도(Anti Surge)	• 규정 없음	• 좌동	• 쿼터량과 실수출 물량의 차이로인한 시장교란의 경우 상호협정의에 의해 특별 규제조치 가능	• 쿼터 소진율이 낮은 국가에 특히 불리 - 미국은 이미 80년 한·미 섬유협정시 동개념 적용
우회수출	• 우회수출금지 • 상호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TSB에 회부	• 좌동	• 우회수출의 증거가 있는 경우 기존쿼터에서 삭감 • 조정 동 조정은 관계국간 협의에 따라 조정시기 및 범위결정 • 관계국간 미해결시 TSB에 회부	• 특히 EC가 이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 • 기업의 우회수출 추진시 정부당국과 사전협의 필요 • 수출국이 이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강조
기업존립을 위한 최소생산	• 소규모, 저수준 생산규모의 수입국은 연중가율 6% 이하적용가능	• 좌동	•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연중가율 하향조정 외에도 상호협정에 의해 융통성도 제한가능	• 이들 국가의 경우 기준 쿼터량 삭감, 연중가율 억제, 융통성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임
신참수출국, 소규모 공급국, 주변 생산국 우대	• 동 국가들은 우대되어야함	• 좌동	• 동국에 대한 규제는 통상적으로 피야하며 규제를 하더라도	• 우리나라 등 주요수출국에는 이로 직접적영향은 없으나 간접적으로는 쿼타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상호시장 개방	• 점진적 세계 섬유무역자유화 및 무역장벽 제거	• 좌동	• MFA의 기준목표는 섬유류교역의 확대와 자유화임을 재확인	• 선진국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개도국 시장의 개방요구 압력 • 개도국은 선진국의 산업조정정책 실시 의무강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원칙을 무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탈조항(Reasonable departure)이 삽입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GATT 19조의 Safeguard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⑤ MFAⅢ(1982.1~1982.7) 여기에서는 수출국에 비해 수입국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협정에서는 선발개도국에 대하여 기준 Quota를 현행보다 낮게 책정하고 후발개도국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 Quotal 운용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개도국중에 NICs 대해서는 졸업개념을 적용시켜 선별적용원칙을 부과하였으며 수입급증방지제도(Anti-Surge Mechanism)를 채택하여 어떤 품목이든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은 수출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또한 저가 수입품목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체의 섬유소비증가율이 둔화될 때에도 시장교란으로 인정해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MFAⅢ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선진제국에 대한 수출은 여타가치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간단히 논하여보자. 섬유류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30%, 고용총출의 30%, 전제조업체 총종업원의 32%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수출산업인데 MFAⅢ 타결로 NIC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증가율을 수입국내 소비증가율과 연동시키며, 섬유류, 수출국에 대한 물량규제에 있어서 Quota의 자동소멸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수출개도국은 공동전략을 수립하여 선진국에 대한 반격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의 섬유류 규제동향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품질고급화에 급급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섬유수출중 50%는 쿼터지역, 50%는 비쿼터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쿼터지역 수출은 우선 MFAⅢ에 의해 수량으로 제한되고 있기때문에 가능한 한 같은 양을 고가품으로 수출해서 더 많은 외화획득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sup>(19)</sup>

둘째, 선진국 협상을 할 때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즉 섬유시장은 Buyer's Market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바,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과 MFA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여 개도국 분할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진국들의 조직적 횡포를 공동분석하여야 한다.

#### 4. GSP 수혜폭 축소경향

제 2차 세계대전후 많은 식민지국가들이 독립하여 공업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인구과잉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으로 경제발전속도가 느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벌어져 이른바 남북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해 차관을 공여하는 등의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였지만 직접적인 원조가 개도국들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이 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선포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설기관으로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를 발족한 것을 계기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Prebisch가 GSP<sup>(20)</sup>의 도입실시를 주창하였으며 이는 마침내 1968년 제 2회 「뉴델리」 UNCTAD 총회에서 일반적 비상호주의적 무차별적인 특혜제도(System of Generalized, Non-reciprocal and Non-discriminatory Preference)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보게되었다. 그후 1974.9~1979.4에 개최되었던 동경 Round에서 GSP가 GATT 규약으로 명문화됨으로써 합리적인 무역규범의 하나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GSP는 1971년 EC가 최초로 채택 실시한 이래 일본, 미국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20개 선진국이 약 140여개의 개도국(속령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sup>(21)</sup>

GSP의 체계는 대개 수혜대상품목, 관세감면의 폭, 원산지규정, 보장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수혜대상품목은 GSP 공여국가의 경제현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혜대상품목을 개별적으로 지정하

(19) KIET, 국내의 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1981.

(20)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제도라고 번역되고 있음.

(21) K.T.A., G.S.P와 발전도상국, 1981.

고 그외의 품목은 수혜받지 못하는 Positive List제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전부 특혜를 주는 Negative List제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그리고 GSP 대상품목으로서 관세감면을 받는 정도는 무차별적으로 완전히 면세되는 경우와 품목에 따라 세율을 일부 인하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관세율은 매년 각국의 관세율표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또한 GSP 수혜대상 개도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을 두고있다. 이 경우 자국의 원자재로 제조된 상품에 대해 개도국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개도국이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 요건을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기준과 가공도기준의 두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기준은 최종상품의 부가가치에 있어 수출국인 개도국에서 부가시킨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개도국의 상품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며 가공도기준은 수입원자재를 가공한 후에 생산된 제품의 상품분류가 원칙적으로 달라져야 그 상품을 당해 개도국상품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GSP 대상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선진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특혜를 중지하는 등의 보장조치<sup>(22)</sup>를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장조치로서는 Ceiling 제와 Escape Clause의 두가지인바, 전자는 대상품목별로 연간 수입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내에서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후자는 무제한의 특혜수입은 인정하되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GSP 수혜를 정지하는 것이다. GSP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택하고 있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주요수출시장인 미국 EC 일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의 GSP는 1974년의 통상법에 의거 대통령의 행정명령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제 1기 실시기간은 1977.1~1985.1간의 9년으로 내년부터 제 2기를 맞게된다. <표 6> 수혜대상국가는 1984년 현재 142개국(28개속령포함)으로 공산국가 OPEC 회원국 국제무역질서를 교란시키는 국가

<표 6>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실시기간	대상품목	관세율	보장조치
미 국	제 1기 1976. 1. 1— 1985. 1. 3 제 2기 1985. 1. 4— 1993. 7	Positive List	무차별 완전면세	경쟁력충족기준 <sup>1)</sup> 적용출입개념 <sup>2)</sup> 도입
EC	제 1기 1971. 7. 1— 1980. 12. 31 제 2기 1981. 1. 1— 1990. 12. 31	Positive List 상의 품목	농수산물 : 품목별 세 율 인하 공산품 : 완전면세	농수산물 : Escape Cla- use <sup>3)</sup> 적용 공산품 : Ceiling <sup>4)</sup> 활용
일 본	제 1기 1971. 8. 1— 1981. 3. 31 제 2기 1981. 4. 1— 1991. 3. 31	농수산물 : Positive List 공산품 : Negative List	농수산물 : 품목별 세 율인하 공산품 :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완전 면 세	농수산물 : Escape Cla- use <sup>3)</sup> 적용 공산품 : Ceiling <sup>4)</sup> 활용

주 : 1) 경쟁력 충족기준(Competitive Need Criteria) : 경쟁력 보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한 일정한 기준으로 만일 특정품목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차기년도 GSP 수혜를 정지.

2) 출입개념 : 수혜대상 개도국의 경제발전정도 상품의 경쟁력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 특정 개도국에 대한 GSP 수혜를 중지.

3) Escape Clause : 면책조항이라고도 하는데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GSP 수혜를 정지하는 제도.

4) Celing 제 : 품목별로 연간 특혜수입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내에서만 특혜를 제공.

(22) 전절의 Safeguard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선진국 일방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등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GSP 대상품목은 Positive List 상의 품목으로서 직접수송원칙과 부가가치기준(35%이상)에 의한 원산지규정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약 3,000개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GSP 혜택을 줄 경우 미국내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섬유류 시제류와 일부 전자제품과 철강 유제품은 수입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GSP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sup>(23)</sup>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제도의외에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경쟁력충족기준(Competitive Need Criteria)을 설정하여 1개 수혜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미국 GNP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sup>(24)</sup> 당해 품목의 미국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sup>(25)</sup> 일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다음해부터 GSP 수혜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1981년부터는 졸업개념(Graduation Concept)을 도입하여 경쟁력충족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혜국의 경제발전정도, 상품의 경쟁력, 수입상품에 대한 미국내산업의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미국이 임의적으로 GSP 수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C는 GSP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현재 제 2기(1981~1990) GSP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면에서 상당히 엄격하다. 대상품목을 Positive List 상의 품목으로 제한하여 공산품에 대해서는 완전면세하고 있으나 농산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농산품에 대하여는 Escape Clause 공산품에 대하여는 Ceiling 제를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Community Tariff Quota 제도를 실시하여 EC 전체의 수입량을 회원국에게 할당하여 수입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역외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철강 신발 가죽제품등을 관심품목으로 분류하여 이의 수입한도증액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개도국을 선발개도국과 후진개도국으로 분류하여 선발개도국에 대한 특혜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본도 공산품에 대해서는 Ceiling 제를 채택하여 수입을 감시하고 있는데 자 품목별로 매일 또는 매월 수입량을 철저히 추적하여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GSP 수혜를 정지시키고 있다. 이와 아울러 1개 품목 대

〈표 7〉 미국 GSP 연장법안의 주요 개정내용

	현행법	개정법
1. 실시기간	1976. 1. 1—1985. 1. 3 (9년간)	1985. 1. 4—1993. 7. 3 (8.5년간)
2. 수혜대상국가	1인당 GNP가 9,000달러 미만인 개도국 및 속령 (114개 개도국 및 28개 속령)	1인당 GNP가 8,500달러 미만인 개도국 및 속령 (미결정)
3. 수혜제한	해당품목의 미국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또는 연간 수입액이 5,769만 달러 <sup>1)</sup> 이상인 품목	○ 1985. 1. 4—1987. 1. 3 : 현행과 동일 ○ 1987. 1. 4—1993. 7. 3 : 당해품목의 미국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 또는 연간수입액이 2,500만 달러 <sup>2)</sup> 이상인 품목
4. 부대조건	—	○ 수혜국들이 미국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국의 시장여건을 개선할 것. ○ 수혜국들이 미국의 특허, 상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법을 제정할 것.

주 : 1) 74년 불변가격으로 2,5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미국 GNP의 일정비율로 매년 조정  
2) 현행 금액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로서 실제 적용될 최고 금액은 매년 별도 결정

(23) K. T. A. 미국의 GSP공여품목수출증대 전략, 1982.  
(24) 1984년의 경우 5,769만 달러이상.  
(25) 연간수입액이 약 137만달러 이하인 품목은 제외.

일 수출액이 일본의 당해품목 총수입액의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개도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GSP 혜택을 정지하고 있다.

GSP 그 동안 수혜국가의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선진각국이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 선홍공업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해 GSP 공여폭을 점차 줄여나가거나 GSP 대상국가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은 이미 전술하였다. 특히 미국은 <표-7>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4년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제2기(1985.4.1~1993.7.3) GSP 연장법안에서 수혜 대상국가 및 품목의 선정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을 뿐 아니라 수혜국의 시장개방정도과 지적소유권 보호여부를 수혜대상국선정의 부대조건으로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는 1987년 이후부터는 GSP 탈락품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sup>(26)</sup>

이와같이 주요 선진국들이 GSP 수혜를 점차 줄여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국제 Round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홍공업국가에 대해 개도국출입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대 선진국 수출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무역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5. 잔존수입제한조치의 철폐거부

잔존수입제한품목이란 GATT 가입 이전부터 제한하고 있던 것을 GATT 가입 이후에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할 의무를 이행치 않고 현재까지 수입제한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196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IMF 8조국」으로 이행함으로써 무역 및 환거래에 있어서의 제한조치를 철폐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GATT로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IMF 8조국 및 GATT 11조국으로 이행한 후에도 GATT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제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제한 방식을 잔존수입제한이라고 한다.

GATT는 선진국들이 GATT 설립이후에도 잔존제한품목의 규제를 철폐하지 않자 1960년 제 17차 GATT 총회에서 잔존수입 제한방식은 명백히 GATT 규정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수입제한을 감감, 철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잔존수입제한철폐」에 관한 규칙을 정하였다.<sup>(27)</sup> 그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IMF 9조국 및 IMF 11조국들은 ① GATT에 적합하지 않은 수입제한 품목을 조속히 GATT에 통보하고 수입제한철폐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② 잔존수입 제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가는 GATT 제22조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③ 당사국간의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을 얻지 못할 때는 GATT 제23조 2항에 따라 GATT에 제소할 수 있다. ③ GATT는 제소된 문제를 검토하고 권고 혹은 결정을 내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국측의 대항조치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규칙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GATT에 통보된 잔존수입제한 품목은 선진 11개국에서 130여개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8>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선진국 중에서 특히 프랑스, 일본 및 서독 등이 잔존수입제한품목수가 아주 많은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농산품이 공산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서독, 프랑스, 이태리의 경우에는 공산품의 잔존수입제한품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Ⅳ. 韓國貿易에 對한 影響과 改善政策案

이상의 신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에 커다란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를 선진국별 수입규제와 품목별 규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논하기로 한다.

(26) K. T. A. 80년대 GSP제도의 전망과 대책, 1981.

(27) Lambsdorff, Otto Graf, "Protecion: Toda's Challenge," Economic Impact (Feb. 1982) pp.25~29.



〈표 8〉 주요국의 잔존수입 제한

(1981년 1월 1일 현재)

국 명	품 목 수	농 산 품	철공업품	주 요 품 목
일 본	27	22	5	쇠고기, 유제품, 오렌지, 파실, 석탄, 피혁
서 독	14	3	11	청어, 조제야채,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의류, 도자기
프 랑 스	46	19	27	파실일부, 야채일부,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도자기 라디오, TV, 완구
이 태 러	8	3	5	바나나, 포도, 과일쥬스, Anti Konock 제, 천연, 코르크, 우산및 지팡이 부품
베 네 루 스	7	4	3	파실일부, 야채일부, 치클런, 석탄, 코르크
영 국	3	1	2	바나나, 황마직물, 포장용매
미 국	7	1	6	정제당, 영문서적
카 나 다	5	4	1	버터, 치즈, 분유, 카세인, 사료
스 웨 덴	7	5	2	청어 및 어물일부, 사과, 소맥, 신발류, 양육, 야채 및 파실일부, 에틸알콜, 금(미가공의 것)

참조 : CCCN 4 단위 기준

선진국별 특별수입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 무역의 축소균형유도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즉 양국간 수출입의 규모확대에 제동역할을 함으로써 보완적인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역수지 악화가 가중된다. 이는 규제대상품목의 수출경쟁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데 반해 이 품목의 수출이 사전에 제한됨으로서 수출소득의 증가폭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별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경제협력의 모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양국간 무역마찰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무역확대가능의 부문을 발굴모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제3국시장에의 진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미·일시장 편중에서 탈피하여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 시장에 대한 침투노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별 수입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한층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sup>(28)</sup>

다음으로 품목별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먼저 부정적 측면을 보면 첫째, 관련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적인 수출물량제한에 의해 규제관련산업의 재투자가 부진하게 되며, 시장기능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산업의 사양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련산업의 투자확대가 제한됨으로써 고용기회가 감소한다는 것이다.<sup>(29)</sup>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선진국의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품목의 품질고급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출국의 산업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타산업으로의 강제적이전 압력에 따른 기술개발촉진이 이루어져 자본 및 기술부족에 따르는 산업구조의 재편성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품목별 규제 역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무엇보다도 지역별 집중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sup>(30)</sup>

〈표-9〉에서 제시하는 바와같이 1962년도에는 전체수출물량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주에 62.1%나 집중되었으며, 1972년 이후에는 미국에 대한 비중이 평균 35~45%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경제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 초반에 해외시장개척활동이 거의 없었으며 우리의 기술수준도 대단히 낮아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주에 국한되었던 것과 70년대 이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 기인한다.

(28) 이영균, 1970년대 우리나라 무역구조분석, 『조사월보』, 한국은행, 1980, 5, pp. 45~65.

(29) KIET, 한국수출산업의 성장기전망과 정책방향, 특별보고 제30호, 1980, 8.

(30) 수출과 국민경제

〈표 9〉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구성비

단위 : %

지 역 \ 년 도	1962	1966	1973	1976	1980	1981	1982	1983
아 시 아 (일 본)	62.0 (42.8)	41.9 (27.0)	48.8 (38.5)	41.0 (24.5)	41.2 (17.4)	39.2 (16.5)	37.7 (15.5)	37.2 (13.9)
유 럽 (EC)	15.0 (11.9)	13.6 (7.0)	11.8 (10.7)	17.5 (14.9)	17.8 (15.2)	16.2 (12.9)	17.4 (13.4)	15.6 (12.4)
북 미 (미 국) (카나다)	22.4 (21.9) (0.3)	40.8 (38.3) (2.3)	36.4 (31.7) (3.9)	36.9 (31.1) (4.0)	29.7 (26.3) (2.0)	30.5 (26.5) (2.3)	33.2 (28.6) (2.0)	37.9 (33.7) (2.6)
남 미	0.7	0.2	0.8	0.3	1.4	2.2	0.8	0.7
아 프 리 카	0.1	2.8	1.0	2.8	4.4	6.1	4.8	3.2
오 세 아 니 아 (호 주)	0.2 (0.2)	0.8 (0.5)	1.1 (0.8)	1.4 (1.3)	1.6 (1.3)	1.7 (1.4)	1.9 (1.4)	1.7 (1.4)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액수(백만달러)	54.8	250.3	3,225.0	7,715.3	17,504.9	21,243.8	21,853.4	24,445.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자년도판

특히 간과해서 안될 사실은 중동건설경기에 힘입어 70년대 이후이래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또 〈표-10〉에서 보듯이 우리의 전체수출액중 10대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62년에는 93.6%, 1983년에는 72.1%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기 1983년의 경우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등 3개국에 50%이상의 수출물량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가 그들의 국내정치·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대상으로 쉽게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31)</sup> 그러므로 대외거래의 교섭력강화와 경제여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둘째, 지역별 집중에 대한 개선 못지않게 품목별 집중에 대한 개선도 요망된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품목의 집중현상은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1983년의 경우 10대 수출품목은 전체수출액의 7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섬유류, 선박, 전자제품, 철강, 신발류 등 5개품목이 70%나 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은 5개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5개품목중에서 섬유류는 비교우위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비교우위가 약화된 것으로 예상되고, 신발류, 섬유류, 철강 등의 3대품목은 세계각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대상품목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수출 전략에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불리한 국제경제 환경속에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출상품구조의 개편을 통한 비교우위상품의 확보와 생산력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sup>(32)</sup>

세째, 수출실적주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1990년대 이후 국내 각 기업들이 해외수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막대한 특대지원의 결과라 하겠다.<sup>(33)</sup>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여기에서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기업은 수출입국이라는 미명아래 각종 지원금, 세제상, 금융상의 혜택을 노리고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sup>(34)</sup> 그 결과 수출물량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출실적 위주로 행하여짐에 따라 기업은 장기전망에 따른 시설투자나 기술개발투자를 회피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국제경쟁력을

(31) 안승철, "새로운 무역무역 협상논의와 한국의 입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제 13차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84.6.

(32) 隅谷三喜男, 「한국의 경제」, 제 7장 고도성장의 명암, 한울총서, 12, 1983.7.

(33) 박병호, 한국무역론, 제7장 제2절 한국무역의 정책방향, pp.224~227, 경운사, 1981.

(34) 김수용, 한국의 무역성적과 물가변동, pp.90~98, KIE연구총서 4, 1980.

<표 10> 우리나라 10대 수출시장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년 도	1962		1965		1971		1976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1	일본	23.5 (42.8)		미국	61.7 (35.2)	미국	693.6 (51.3)	미국	2,993.5 (31.3)
2	미국	12.0 (21.9)		일본	44.0 (25.1)	일본	260.6 (19.3)	일본	1,890.2 (24.5)
3	홍콩	4.7 (8.5)		월남	14.8 (8.4)	월남	65.8 (4.9)	서독	401.2 (5.2)
4	오끼나와	3.7 (6.7)		홍콩	10.8 (6.2)	홍콩	62.5 (4.6)	홍콩	324. (4.20)
5	이탈리아	2.0 (3.6)		스웨덴	5.1 (2.9)	서독	35.2 (2.6)	캐나다	308.6 (4.0)
6	영국	1.6 (3.0)		태국	4.3 (2.5)	캐나다	26.2 (1.9)	영국	254.6 (3.3)
7	대만	1.3 (2.5)		화란	3.9 (2.2)	화란	18.9 (1.4)	사우디아라비아	231.5 (3.0)
8	프랑스	1.0 (1.8)		영국	3.6 (2.0)	싱가폴	13.3 (10.0)	화란	200.6 (2.6)
9	월남	0.8 (1.5)		벨기에	3.3 (1.9)	대만	11.6 (0.9)	쿠웨이트	192.9 (2.5)
10	화란	0.7 (1.3)		서독	3.2 (1.8)	영국	11.2 (0.9)	이란	146.6 (1.9)
합계		51.3 (93.6)		154.7 (88.4)		1,198.8 (88.7)		6,349.5 (82.3)	
총수출		54.8 (100.6)		175.1 (100.0)		1,352.0 (100.0)		7,715.3 (100.0)	
순 위	년 도	1980		1981		1982		1983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1	미국	4,606.6 (31.1)		미국	5,560.9 (26.5)	미국	6,250.0 (28.6)	미국	8,245.4 (33.7)
2	일본	3,039.4 (17.4)		일본	3,505.2 (16.5)	일본	3,387.3 (15.5)	일본	3,403.6 (13.9)
3	사우디아라비아	946.1 (5.4)		홍콩	1,150.9 (5.5)	사우디아라비아	1,124.1 (5.1)	사우디아라비아	1,125.4 (4.6)
4	서독	875.5 (5.0)		사우디아라비아	1,073.9 (5.1)	영국	1,098.8 (5.2)	영국	1,102.6 (4.5)
5	홍콩	823.3 (4.7)		서독	803.1 (3.8)	홍콩	897.7 (4.2)	홍콩	817.7 (3.4)
6	영국	572.5 (3.3)		영국	702.3 (3.3)	서독	753.2 (3.5)	서독	775.3 (3.2)
7	인도네시아	365.6 (2.1)		리비아	586.4 (2.8)	노르웨이	525.3 (2.4)	캐나다	629.2 (2.6)
8	화란	349.5 (2.0)		캐나다	482.2 (2.3)	리비아	443.2 (2.1)	쿠웨이트	566.7 (2.3)
9	캐나다	343.4 (2.0)		프랑스	398.5 (1.9)	캐나다	441.3 (2.0)	싱가폴	538.3 (2.2)
10	프랑스	291.2 (1.7)		인도네시아	365.0 (1.7)	인도네시아	382.9 (1.8)	화란	413.7 (1.7)
합계		12,213.1 (69.9)		14,628.4 (68.9)		15,303.8 (70.0)		17,618.4 (72.1)	
총수출		17,504.9 (100.0)		21,243.8 (100.0)		21,853.4 (100.0)		24,445.0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4.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84.

〈표 11〉 우리나라 10대 수출상품 변동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1 9 6 2		1 9 7 2		1 9 8 2		1 9 8 3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생 사	4.0	섬 유 류	619 (38.1)	섬 유 류	5,925 (27.4)	섬 유 류	6,051 (25.0)
2	팅 스 맨	3.4	목 제 품	170 (10.5)	선 박	2,831 (13.1)	선 박	3,735 (15.5)
3	선 어	2.9	전 기 기 기	125 (7.7)	철 강 제 품	2,363 (10.9)	전 자 제 품	3,021 (12.5)
4	광 물 성 료	2.8	잡 화 품	122 (7.5)	전 자 제 품	2,170 (10.0)	철 강 제 품	2,474 (10.2)
5	합 판	2.1	비 식 용 원 자 재	120 (7.4)	선 발 류	1,182 (5.5)	선 발 류	1,270 (5.2)
6	잡 제 품	1.9	철 강 금 속	98 (6.0)	합 성 수 지	592 (2.7)	합 성 수 지	591 (2.4)
7	면 직 물	1.8	수 산 물	70 (4.3)	금 속 제 품	504 (2.3)	금 속 류	540 (2.2)
8	기 계 류	1.4	선 발 류	55 (3.4)	전 기 기 기	369 (1.7)	유 지	524 (2.2)
9	의 류	1.1	화 학	36 (2.2)	시 멘 트	332 (1.5)	전 기 기 기	457 (1.9)
10	화 학 제 품	1.0	기 계	32 (2.0)	원 양 어 류	329 (1.5)	타 이 어	362 (1.5)
소 계		22.4 (40.9)		1,447 (89.1)		16,597 (76.8)		19,025 (78.5)
총 계		54.8 (110.0)		1,624 (100.0)		21,616 (100.0)		24,022 (100.0)

자료 : 상공부, 통상업무편람, 1984.

상실케 되었다. 정부는 국내유치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여 내수가 늘어난 국내판매에서 얻어지는 폭리를 바탕으로 수출업체들이 출혈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부과 등을 통해서 그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정부의 지원정책도 수출실적위주로부터 수출잠재력 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내책, 출혈수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시장에서의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인하여 간혹 선진국간에도 출혈수출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제품의 품질수준이나 생산기술수준이 낮아 해외경쟁에서 오로지 저렴한 가격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출혈수출의 보편적인 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출혈수출을 시도하는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모두가 국내적인 요인임에 문제점이 된다. ① 기업들이 수출자체를 통한 이윤보다는 정부에 의한 수출실적위주의 지원정책으로부터 이득을 얻어내기 위하여 국내경쟁자와 과당수출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② 정부가 저렴한 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여 온실효과를 줌으로써 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이상의 이윤을 취할 수 있다. 내수가격에서의 이러한 높은 이윤폭이 해외시장에서의 출혈수출을 다소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③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혜택과 수출손실금의 보전 등이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투자보다는 안이한 출혈수출을 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얻기 위하여 출혈수출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출혈수출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최근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주요한 표적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

여야 할 것이다.

아물든 이상에서 몇가지 정책방향을 언급했으나 더욱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물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정확 신속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연구분위기 조성파 국내적으로는 모든 경제 통계조사자료가 신뢰되지 못하는 풍토가 아니라 엄정하다는 기본인식이 근본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광석,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의 성과와 과제 「한국개발연구」, 1981, 겨울호
2. 김수용, 「한국무역의 성장과 구조변화—공산품 무역구조변동의 국제비교」, 연구총서 1, 한국산업경제기술훈구원, 1982, 2.
3. 김신형, 「국제경제론」, 법문사, 1981.
4. 김중웅, 「한국의 국제수지 외환론」, 법문사, 1982.
5.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1982.
6. 박병호, 「한국무역론」, 경문사, 1981.
7. 서석대, 한국수입정책의 역사적 고찰과 향후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 1980.
8. 이영균, 1970년대 우리나라 무역구조분석, 「조사월보」한국은행, 1980. 5.
9. K. T. A. 미국의 상계 및 반덤핑관세현황과 대응전략, 1982.
10. K. T. A. 미국의 GSP 공여품목 수출증대 전략, 1982.
11. K. T. A. GSP 와 발전도상국, 1981.
12. K. T. A. 80년대 GSP제도의 전망과 대책, 1981.
13. K. T. A. 1976년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 분석, 「무역」 1980. 4.
14. K. T. A. 「1982년 무역 및 국제수지 동향」, 조사자료 83-6, 1983.
15. KIET, 「보호주의의 배경과 80년대 세계무역과제」, 1982.
16. KIET,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1981.
17. KIET, 「80년대의 국제무역환경과 수출진흥대책」 국제경제연구원 특수분석 시리즈 제78호, 1979. 12.
18. Hudec, Robert E., The GATT Legal System and world Diplomacy (New York; Praeger, N. Y. 1975.)
19. Lambsdorff, Otto Graf, "Protectionism; Today's Challenge". Economic Impact (Feb, 1982)
20. GATT, International Trade, 각년도판.
21. I. M. 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년도판
22. U. 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각년도판.